「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명희 의원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11인

3. 제안이유

○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며,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
○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제4조, 제15조, 제22조, 제53조의2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23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며,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상위법을 근거로 운영하던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.

- 집행부서에서는 신설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조항에 따라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 시설이 될 수 있도록, 학교·보건소 등 지역 네트워크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재학대 방지 대책의 수립·시행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